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4.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86호로 2024년 8월 12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8. 19. ~ 8. 23.)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는 변경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정비하여 현행화 함.
- 안 제2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대상을 신설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

○ 검토결과

- 동 조례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 11. 8. 제정된 바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21.11. 30. 전부개정된 이후 정비되지 않았음.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는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해 2023. 3. 27. 일부개정 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및 4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일괄정비와 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선제적 화재예방 도모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서울시 조례 제정 현황

	단체명	조례명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2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3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4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5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참고 자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 11. 30.]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9.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개정 2023. 3. 27.]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4.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88호로 2024년 8월 12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 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라.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5조의2)
- 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5조의3)
- 바. 자전거 통행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14조)
- 사.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8. 19. ~ 8. 23.)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통행 등의 시설 운영에 대해 구체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정의를 규정.
- 안 제2조의2는 자전거도로의 구분 조문 신설.
- 안 제3조는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 우선 설치 규정.
-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신설.
- 안 제14조는 자전거 통행의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15조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 검토결과

- 동 조례는 우리 구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관리 및 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함.

(단위:구간)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영등포	6	18	17	20

- 한편, 자전거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이용률은 높아 지는데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빈번하여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임. 예컨대 한강 등 하천을 끼고 있고 평탄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타지역보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TAAS¹⁾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최근 3년동안 평균 170여건 이상으로, 그에 따른 자전거 사고율이 높음. 구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우선설치, 자전거도로의 안전 통행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이용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 지정 등의 체계적인 운영 방법 강화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단위:명)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사고건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	사망자	부상자
영등포	150	1	169	173	1	203	196	1	221
서울시	2,850	15	3,132	3,128	14	3,411	3,333	27	3,653

1)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서울특별시의 25개 전 자치구가 해당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으며 광진구의 경우 한강과 중랑천을 끼고 있어 영등포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 인용하여 2022. 12. 27. 전부개정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고 자료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